##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46

발의연월일: 2024. 12. 3.

발 의 자:정점식·김도읍·성일종

박충권 • 고동진 • 서명옥

신성범 · 정희용 · 김태호

박덕흠 · 김장겸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소방기술 관련 자격·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의사·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중에서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도록 하며,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고령화로 인해 고령인구 비율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농어촌지역은 의용소방대원의 모집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농어촌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6.8%에 달함(2021년 기준).

이에 인구 수 및 고령인구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5조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구 수 및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70세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정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              | 제5조(정년)           |
| 은 65세로 한다. <u>&lt;단서 신설&gt;</u> | <u>다만, 인구 수</u>   |
|                                 | 및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 |
|                                 |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
|                                 |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70세로 |
|                                 | 한다.               |